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6
----------	-----

발의연월일 : 2024. 4. 4.

발의자 : 원주영, 김지훈(국), 이수련,
전혜연, 한근수, 박윤옥,
정현미, 김지훈(민), 이진환
한송연

1. 제안 이유

남양주시 학교 내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예방·진단하고 학교 및 사회 적응력 향상과 인성발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 나. 지원사업 신설(안 제6조제1항제3호~제2항)
- 다.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역할 신설(안 제6조의2)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6. 관련 법령 :

- 「초·중등교육법」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활동”을 “활동 및 상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서비스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학생 상담 및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역할) ①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활동은 학교폭력 등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예방·진단하고, 학생의 학교 및 사회 적응력 향상과 인성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학교폭력 및 문제 해결에 관한 지원
2. 학생·가정·지역사회 요구를 파악·반영한 계획 수립 및 수행
3. 학교와 지역사회 각 기관과의 인적·물적자원 연계
4. 학교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3. (생 략)

<신 설>

<신 설>

3.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서비스 지원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학생 상담 및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의2(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역할) ①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활동은 학교폭력 등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예방·진단하고, 학생의 학교 및 사회적응력 향상과 인성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학교폭력 및 문제 해결에 관한 지원

2. 학생·가정·지역사회 요구를 파악·반영한 계획 수립 및 수행

3. 학교와 지역사회 각 기관과

의 인적·물적자원 연계

4. 학교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지
원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정 수반 요인
 -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제1항제3호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서비스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도 - 시·군 협력사업으로 학교사회복지사 인건비 및 복지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학교사회복지사 인건비(40,000천원)

계	기본급(월)	명절휴가비	각종 수당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40,271,546	2,485,010	1,000,000	2,998,750	3,301,716	3,150,960

- 기본급 : 월 2,485,010원 <11,890원 × 20 9시간(주휴수당 포함)>
- 명절휴가비 : 1,000,000원(500,000원 × 2회)
- 각종수당 : 복지포인트 300천원, 건강검진 400천원, 기간제근로자 공정수당 1,407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891,750원(11,890원 × 1.5배 × 50시간)
- 법정부담금·퇴직금 : 법령 요율에 따라 집행하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지급
※ 보수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및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등에 따라 산정
※ 기타 학교 관련 회계 규칙 및 집행기준 등 적용

- 운영비(10,000천원)

※ 사업비 50백만원 중 학교사회복지사 보수를 제외한 금액 활용.

○ 2024년 예산편성액 (신규사업)

총 사업비(천원)	도비(천원)	시비(천원)
50,000	15,000	35,000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시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